8. 住宅賃貸借保護法 施行令中 改正令

大統領令 第14,785號 1995. 10. 19

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"서울특별시 및 직할시"를 "특별시 및 광역시(군지역을 제외한다)"로, "700만원"을 "1,200만원"으로, "500만원"을 "800만원"으로 한다.

제4조중 "서울특별시 및 직할시"를 "특별시 및 광역시(군지역을 제외한다)"로, "2,000만원"을 "3,000만원"으로, "1,500만원"을 "2,0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◇개정이유◇

주택임차인의 생존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증금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,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려는 것임.

◇주요골자◇

가. 보증금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등 대도시의 경우 현행 700만원이하에서 1,200만원이하로, 기타 지역의 경우 현행 500만원이하에서 800만원이하로

상향조정함(영 제3조 제1항).

나.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자격을 서울등 대도시의 경우 보증금 2,000만원이하인 임차인에서 3,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, 기타 지역의 경우 보증금 1,500만원이하인 임차인에서 2,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조정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함(영 제4조).

〈법제처 제공〉

공기보다 품질생각 이익보다 기술생각